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66호 2010. 2. 2(화)

포항시보

- 시장지시사항..... 2
- ◀ 입법예고 ▶
-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입법예고(제2010-137호)..... 4
-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 2010-150호) 9
-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0-151호) 32
- ◀ 공 고 ▶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제2010-130호) 38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39

회									
람									

시장님 지시(훈시)사항

- 2010. 2. 1(월)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 일본 연수에 국과장 모두가 참여되도록 하기 바람 ○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획을 수립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각종 모금활동과 관련 ‘경상북도 공동모금회’ 명의의 입금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 ○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검토 조치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룡포읍~ 호미곶면 도로확장사업에 가로등을 과다하게 설치한 부분 검토 및 대책 추진 바람 ○ 자전거도로 개설시 ‘자전거전용 보드블럭’ 사용하여 미관조성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람 ○ 임하댐에 보다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 및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21만톤의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되므로 낙동강수계 관리 등과 관련 임하댐에 많은 양의 물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 바람 ○ 설맞이 종합대책 마련 및 추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시장·터미널·다중집합장소 등에 현장방문 지도 점검토록 하기 바람 - 새마을기념관·덕실마을·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미술관·새천년기념관 등 볼거리를 홍보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전부서</p> <p style="text-align: center;">전부서 (국제협력팀) 수산진흥과</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복지과</p>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과</p>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과</p> <p style="text-align: center;">상수도과</p> <p style="text-align: center;">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경제노동과 교통행과 건축과 관광진흥과</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을 통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 ○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할 것 ○ ‘탄소배출권 거래’ 및 ‘탄소거래소 설립’ 과 관련한 대책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출은 카드를 이용토록 지도하기 바람 	<p>전부서</p> <p>녹색성장팀 재정관리과</p> <p>녹색성장팀</p> <p>전부서 기획예산과</p>
지 시 10-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노원구청에서 전시중인 ‘호랑이전’ 을 벤치마킹 하여 새천년기념관 등에서 전시를 검토·추진 바람 	관광정책과
지 시 10-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룡포 대게’ 홍보물 설치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지역 등에 대게 홍보용 대형 홍보물을 설치 바람(대게·과메기 시식장면, 오징어 관련 장면 등) 	수산진흥과
지 시 10-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구 이동지역에 시외(고속)버스 등이 잠시 승객들을 하차할 수 있도록 협의·검토 추진 바람 	교통행정과
지 시 10-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포리 마을 인근 도로 미확장 구간 조기개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지장물(건축물) 조속한 철거 및 사업 조기 완료 하기 바람 	건설과
지 시 10-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실적이 저조한 공중전화 BOX 철거를 검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등과 협의하여 공중전화BOX 이용실적이 부진한 곳은 철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보고하고, - 가로가판대 등은 설치수량을 반으로 줄이도록 검토 추진 바람 	건설과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0 - 137호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 1. 28.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와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지원사업내용, 대상범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구성·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제12조)

마.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관련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2.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 여성문화회관장(주소 : 포항시 북구 우현동 4B1L, 전화 054-270-5552, FAX 054-270-5540, E-mail : j01hr@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정안 1부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 2.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4.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 5.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사업
-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
- 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 6.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사업
- 7.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 8.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5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준용한다.

제7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3. 다문화가족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는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5.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6. 그 밖의 관련 전문가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포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다문화가족지원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1월 29일

포항시 공고 제 2010 - 150호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재편성하며,
-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소득세의 폐지를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지방세법 개정예에 따라 관련조문을 재조정하는 등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안 제3조)
- 나.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안 제18조 외)
- 다. 우편송달의 경우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으로 하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조의2)
- 라. 과표구간별 세율이 인하된 주택분 재산세율의 조정 등 지방세법의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안 제27조)

3.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지방세 조례 표준안 시달(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8호, 7503호, 8605호, 2010.1월)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재정관리과장, 주소: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054-270-2486, 팩스:054-270-2490, E-mail:tax09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1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우편 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납입통지서·독촉장 또는 최고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 등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사업소”로, “사업장을”을 “사업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②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균등할” 을 “균등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사업장을” 을 “사업소”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다만,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세 조례」 제24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0조의2 다음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 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1조제1항 중 “법인세할” 을 “법인세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할” 을 “소득세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할” 을 “법인세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득세할” 을 “소득세분”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인세할, 소득세할” 을 “법인세분, 소득세분” 으로, “법인세할” 을 “법인세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할” 을 “법인세분” 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목 중 “소득세할” 을 “소득세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득세할” 을 “소득세분” 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소득세할” 을 “소득세분” 으로, “(「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를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중 “소득세할” 을 “소득세분” 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그 다음달 말일까지” 를 “다음 달 15일까지” 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2(주민세 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세율) ①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0조의2(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2장 제4절 농업소득세를 삭제한다.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를 삭제한다.

제3장 제2절 사업소세를 삭제한다.

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한) 제91조의 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 (생 략) <u>② 보통세는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u>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사업소세</p>	<p>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u>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p>
<p>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 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p>	<p>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 51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p>

현 행	개 정 안
<p><u>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u>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 로 하여 부과한다.</p> <p><u>제20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u> 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가. (생 략) 나. 시내에 <u>사업장을 둔</u> 개인의 표</p>	<p><u>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u> <u>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u> <u>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u> <u>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u> <u>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u> <u>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u> <u>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u> 2. <u>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u> <u>닥 면적, 연면적 및 용도</u> 3. <u>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u> <u>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u> <u>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u> <u>시기</u> 4. <u>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u> <u>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u> <u>시작한 시기</u> 5. <u>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u> <u>필요한 사항</u> <p><u>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균등분</u> <u>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u> <u>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u> <u>납기로 하여 부과한다.</u></p> <p><u>②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u> <u>기준일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납부</u> <u>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u> <u>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납</u> <u>부하여야 한다.</u></p> <p><u>제20조(세율) ① 균등분</u>----- -----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u>사업소를</u>-----</p>

현행		개정안			
<p>준세율 : : 50,000원</p> <p>2. 법인</p>		<p>-----</p> <p>2. 법인</p>			
구	분	세율	구	분	세액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p>		500,000원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p>		500,000원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p>		350,000원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p>		350,000원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p>		200,000원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p>		200,000원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p>		100,000원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p>		100,000원
<p>기타법인</p>		50,000원	<p>그 밖의 법인</p>		50,000원

현행	개정안								
<p>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208 356 684 560"> <thead> <tr> <th>구분</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소득세할</td> <td>소득세액의 100분의 10</td> </tr> <tr> <td>법인세할</td> <td>법인세액의 100분의 10</td> </tr> <tr> <td>농업소득세할</td> <td>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td> </tr> </tbody> </table> <p>(신설)</p> <p>(신설)</p> <p>제21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p>	구분	세율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p>②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다만,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p> <p>제20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세 조례」 제24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p>제1절의2 지방소득세</p> <p>제21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분---</p>
구분	세율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현 행	개 정 안
<p>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 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1월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 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 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u>법인세할</u>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p>
<p>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 까지 제2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소득세분----- ----- ----- -----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p>	<p>③법인세분----- ----- ----- ----- ----- -----</p>

현 행	개 정 안
<p>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 득세법」에 의한 정정·결정 등에 따 라 부과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 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 수하는 경우 그 <u>소득세할을</u> 법 제 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 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 과고지 한다.</p> <p>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소득세할의</u>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지를 하는 때 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 법」 제70조 내지 제72 조 및 제110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 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한 <u>소득세할의</u>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 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에게 그 내역을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u>소득세할을</u> 환부하여야 한다.</p> <p>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u>소득세할의</u> 신고를 받 거나 부과지하는 경우 시장이 신 고를 받거나 부과지 한 것으로 본다.</p> <p>(신 설)</p>	<p>----- -----.</p> <p>②----- ----- ----- -----</p> <p>(「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 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 <u>소득세분</u>----- -----.</p> <p>③----- <u>소득세분</u>----- ----- ----- ----- ----- ----- ----- -----.</p> <p>④----- ----- <u>소득세분</u>----- -----다음 달 15일까지 ----- ----- <u>소득세분</u>----- -----</p> <p>⑤----- -----<u>소득세분</u>----- ----- ----- -----.</p> <p><u>제22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제27조(세율) ① (생략) 1. ~ 2. (생략) 3. 주택 가. (생략) 나. <u>가목 이외의 주택</u></p>	<p><u>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2(주민세 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u></p> <p>제22조의4(세율) ① <u>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u></p> <table border="1" data-bbox="753 868 1222 1026"> <thead> <tr> <th>구분</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소득세분</td> <td>소득세액의 100분의 10</td> </tr> <tr> <td>법인세분</td> <td>법인세액의 100분의 10</td> </tr> </tbody> </table> <p>② <u>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u></p> <p>제22조의5(신고의무) ① <u>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② <u>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0조의2(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u></p> <p>제27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주택 가. (현행과 같음) 나. <u>가목 이외의 주택</u></p>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현 행		개 정 안	
<u><과세표준></u>	<u><세율></u>	<u><과세표준></u>	<u><세율></u>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4,0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6천만원 초과 1억5천 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 액의 1,000분의 1.5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 액의 1,000분의 5	1억5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 액의 1,000분의 4
4. ~ 5.(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제04절 농 업 소 득 세		(삭 제)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 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 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 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 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 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		(삭 제)	

현행	개정안
<p>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u>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p>(삭제)</p>
<p>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u>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삭제)</p>
<p>제44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p>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 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p> <p>제45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 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p> <p>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p> <p>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농업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 할 수 있다.</p> <p>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p>	
<p><u>제02절 사업소세</u></p>	<p>(삭제)</p>
<p><u>제95조(납세의무자)</u>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1. 재산할</p> <p>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 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p> <p>2. 종업원할</p> <p>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p>	<p>(삭제)</p>
<p><u>제96조(과세표준)</u>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재산할</p> <p>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p> <p>2. 종업원할</p> <p>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u>제97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u>재산할</u>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p> <p>2. <u>종업원할</u>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p> <p><u>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u></p>	<p>(삭 제)</p>
<p><u>제98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u></p> <p><u>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u></p>	<p>(삭 제)</p>
<p><u>제99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1. <u>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u></p> <p>2. <u>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u></p> <p>3. <u>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u></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4. <u>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u></p> <p>5. <u>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u></p> <p>6. <u>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u></p> <p>7. <u>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u></p> <p>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u>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 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 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 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함은 과세기 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 원함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 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 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u></p> <p>1. <u>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 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u></p> <p>2. <u>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 닥 면적, 연면적 및 용도</u></p> <p>3. <u>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p> <p>4. <u>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 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 작한 시기</u></p> <p>5. <u>비과세 및 감면사유</u></p> <p>6. <u>기타 필요한 사항</u></p>	<p>(삭 제)</p>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1월 29일

포항시 공고 제 2010 - 151호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수정내용과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계속하여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 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규정이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과 중복 된다는 이유로 2009.12.29 (조례 제973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감면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정 하고자 조례에서 도시계획세의 감면사항을 추가함.

(안 제13조)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31 이전 등록에 한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12.31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함.

(안 제16조의2)

3.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846호, 11305호, 2009.12월)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장, 주소: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054-270-2486, 팩스:054-270-2490, E-mail:tax09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가” 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로 ,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사업자가” 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로 ,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6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동차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p>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 3. (생 략)</p> <p><신 설></p>	<p>----- -----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2(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p>

공 고

포항 도시계획시설(대로1류11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 0 1 0. 1. .

포항시 공고 제2010 - 130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2. 공람일시 및 장소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9:00 ~ 18:00)
-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내용

사업명	위 치	사 업 내 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대로1류 11호선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043-28번지 일원	○ 도로개설 길이=327.3m, 폭=12m 면적 = 6,472㎡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일 ~ 2010.12.31	포항시장

-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담당 [☎(054) 270-34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0년 1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 1. 27.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시행일	2010년 1월 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	------	---------------------

정수

구분	검사항목	경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감	공단	양역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약아 (수자변공사)
			안계염수		임하염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염수		진전지	눌태지수	곡강천 복류수	
			동지의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미생물	1.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원성대장균(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 유해영향유기물질	4.납(Pb)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볼소(F)	1.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6.비소(As)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세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6가크롬(Cr ⁶⁺)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질산성질소(NO ₃ -N)	10mg/l이하	불검출	0.7	0.8	2.4	2.6	0.3	0.7	1.4	0.8
	13.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보론(B)	1.0mg/l이하	0.050	0.025	0.031	0.058	0.052	불검출	0.022	0.033	0.029
	건강상 유해영향유기물질	15.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다이아진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에틸벤젠(Ethyl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득제 및 소득부산물	31.유리잔류염소(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97	0.26	0.88	0.73	0.89	0.27	0.22	0.63	0.84
	32.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457	0.0280	0.0393	0.0535	0.0232	0.0157	0.0333	0.0253	0.0297
	33.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1037	0.02262	0.03319	0.00785	0.00411	0.00992	0.01291	0.01663	0.02543
	34.브로모디클로로메탄(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1581	0.00536	0.00615	0.01784	0.00919	0.00578	0.01189	0.00617	0.00425
	35.디브로모클로로메탄(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153	불검출	불검출	0.0206	0.0099	불검출	0.0085	0.0025	불검출

구 번	검 사 항 목	경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야 (수자원공사) 신뢰, 기계 일부
			안계면수		임하면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면수		진전지	눌테지수	곡강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36.경도(Hardness)	300mg/l이하	132.3	71.8	99.6	143.3	140.4	42.2	72.5	114.3	81.0	
37.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mg/l이하	3.16	4.44	3.83	4.19	1.58	1.34	4.10	2.80	4.90	
38.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39.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0.동(Cu)	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1.색도(Color)	5도이하	1.0	1.0	1.0	1.0	1.0	1.0	1.0	1.0	1.0	
42.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3.수소이온농도(pH)	5.8-8.5	7.6	7.5	7.3	7.8	7.4	7.3	7.1	6.9	7.5	
44.아연(Zn)	3mg/l이하	0.004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34	불검출	0.0030	0.0783	불검출	
45.염소이온(Cl ⁻)	250mg/l이하	불검출	10	13	92	52	12	34	18	11	
46.총발견류물(Total solids)	500mg/l이하	259.0	66.0	85.0	361.0	174.0	53.0	103.0	216.0	181.0	
47.철(F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8.망간(Mn)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0.008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탁도(Turbidity)	0.5mg/l이하	0.060	0.138	0.083	0.101	0.053	0.077	0.089	0.079	0.069	
50.황산이온(SO ₄ ²⁻)	200mg/l이하	불검출	15	17	63	67	12	30	50	17	
51.알루미늄(Al)	0.2mg/l이하	불검출	0.025	불검출	0.03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36	
판 정		경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경 수 장 급수지역 기 준	유 용 동	송 동 리	환 호 동	해 도 동	택 전 리	문 역 1리	구 룡 포 리	약 성	
		용흥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동	택전리	문역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잔류염소	4.0mg/l이하	0.85	0.25	0.89	0.66	0.92	0.33	0.19	0.56	
6.동	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아연	3mg/l이하	0.0050	0.0028	불검출	0.0028	0.0025	불검출	0.0023	0.0835	
8.염소이온	250mg/l이하	74	11	13	97	55	13	36	19	
9.철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0.008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정		수도꼭지 수도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 수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학야정수장 230-4791
-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